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81호 2009. 10. 16.

**공 고**

제2009-81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 정정공고	.....	2
제2009-817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9
제2009-818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10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	--	--	--	--	--	--	--	--	--	--	--	--	--	--	--	--	--	--	--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09-81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 정정공고

『주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2호(2009.08.24)】 (이하 “감리자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의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을 위해 모집공고[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 2009-806(2009.10.14)]한 사항중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정정내용

3. 감리비 산출

망우동 Liga 아파트 신축공사
<b>57,590,116천원 × 2.38% = 1,370,645천원(부가세 별도)</b>

※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 감리는 별도

10. 응모시 제출서류

마.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는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후 낙찰예정자 5개사에 한하여 제출받음

12. 복수예비가격(부가세 별도)

(단위 : 원)

① 1,289,914,010	② 1,295,533,654	③ 1,301,701,557	④ 1,308,280,653	⑤ 1,313,489,104
⑥ 1,318,149,297	⑦ 1,325,276,651	⑧ 1,329,662,715	⑨ 1,335,556,488	⑩ 1,341,313,197
⑪ 1,346,932,842	⑫ 1,351,867,164	⑬ 1,357,212,679	⑭ 1,364,202,969	⑮ 1,369,685,549

※ 공고번호는 최초 공고된 제2009-806호(2009.10.14)로 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은 2009.10.14. 이므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정정 완료된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09-806호 주택건설공사 모집공고를 따로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 정정공고문 1부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 정정 공고후 공고내용

## 1. 사업계획 현황

사 업 명		망우동 Liga 아파트 신축공사
사 업 주 체		(주)다올유씨엘 대표 조경문(☎ 02-533-7516)
사업계획승인일		2009.09.30
사업 계획 내용	위 치	중랑구 망우동 197-1번지 외 23필지
	대지면적	22,865.0㎡
	연 면 적	61,033.14㎡
	건축계획	지하2층 지상 7~15층 아파트 10개동 3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기간	2009.12.01 ~ 2012.02.27(27개월, 예정)
설 계 자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상길(☎ 02-3462-6366)
시 공 자		엘아이지건설(주) 대표 강희용(☎ 02-6900-5300)

## 2. 주택건설사업비

구 분		망우동 Liga 아파트 신축공사	
총 공사비		64,119,040천원	
감 리 대 상 공사비	토목공사	7,102,365천원	57,590,116천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
	건축공사	38,082,206천원	
	기계설비공사	6,608,121천원	
별 도 감 리 대 상 공사비	전기공사	2,917,749천원	6,528,924천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
	정보통신공사	1,412,308천원	
	소방설비공사	1,456,961천원	

### 3. 감리비 산출

망우동 Liga 아파트 신축공사

57,590,116천원 × 2.38% = 1,370,645천원(부가세 별도)

※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 감리는 별도

4. 공고기간 : 2009.10.14 ~ 2009.10.21(7일간, 공휴일 포함)

5. 접수기간 및 장소 : 2009.10.22(목) 09:00 ~ 18:00, 중랑구청 주택과(2층)

### 6. 예정가격 추첨일시 및 장소

가. 예정가격 추첨일시 : 2009.10.23(금) 14:00

나. 장 소 : 중랑구청 4층 기획상황실(사정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는 1층 엘리베이터홀 게시판에 장소안내 예정임)

### 7. 사실확인 서류의 제출기간(예비순위 상위 5개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09.10.26 ~ 2009.10.28(3일간,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증빙서류 제출 : 14. 증빙서류 제출 참조할 것

###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09.10.29(목) ~ 2009.11.04(수)(5일간)

나. 방 법 : 6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내 감리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우편접수는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사항 외의 내용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9. 낙찰자 결정방법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및 감리응모시 제출한 감리 입찰 서류를 개봉하여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

## 10. 응모시 제출서류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자기평가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감리원 배치계획서 1부 포함

다. 감리비 입찰서 (별지 제3호 서식)

※ 봉투에 밀봉하여 표지에 “감리비입찰서” 및 “회사명” 명기

라.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마. 서약서 1부

바. 감리전문회사등록증사본, 위임받은 자가 접수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기타 서류는 14. 참조)

사. 기타사항

1) 별지 제1호 ~ 제5호 응모서류는 원본 제출할 것

2) 상기 이외 각종 증빙서류는 신청서 접수일에 제출하지 아니하며, 입찰 후 낙찰예정자 5개사에 한하여 추후 제출받습니다.

## 11. 응모방법

상기 응모서류를 접수기간에 중랑구 주택과로 직접접수(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접수기간에는 응모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낙찰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를 대조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12. 복수예비가격(부가세 별도)

(단위 : 원)

① 1,289,914,010	② 1,295,533,654	③ 1,301,701,557	④ 1,308,280,653	⑤ 1,313,489,104
⑥ 1,318,149,297	⑦ 1,325,276,651	⑧ 1,329,662,715	⑨ 1,335,556,488	⑩ 1,341,313,197
⑪ 1,346,932,842	⑫ 1,351,867,164	⑬ 1,357,212,679	⑭ 1,364,202,969	⑮ 1,369,685,549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중 당일 입찰참가자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함  
(예정가격의 소수점 첫째자리 절상)

## 13.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리권 인정 제출서류 : 위임장)

나.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을 누락한 입찰

다.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 포함)

라. 평가심의회 자기평가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입찰

#### 14. 증빙서류 제출

각종 증빙서류는 신청서 접수시 제출하지 아니하며, 낙찰예정자 5개사에 한하여 감리지정권자가 별도 통보 후 추가 제출받습니다.

※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학력증명서·재무상태검토보고서·행정청으로부터 인정 받은 감리업무 수행실적사본·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교육훈련 증명서 사본 및 상훈증명서 사본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할 것

#### 15.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공고일 포함)

#### 16. 감리자(원)의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공고일 포함)

※ 최근 소속회사를 변경하여 응모한 감리원은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된 감리회사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입사일이라 함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의 소속변경등록(신고)을 신청한 시점을 말함]

#### 17.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불가함

#### 18. 재무상태의 평가(전체건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중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유동비율 : 181.76%

- 감리자의 유동비율/전체 건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100%

나. 평균 자기자본비율 : 51.47%

- 감리자의 자본비율/전체 건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 비율×100%

#### 19. 감리자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감리자지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음

나. 감리자 지정 이후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변경 지정함  
(재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않음)

다. 적격심사후 낙찰이 가능한 5개사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함. 만일 증빙서류를 통보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리 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함

- 라. 제출한 자체평가서와 수행실적산출표상 실적면적 및 기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낮은 수치로 적용합니다.
- 마. 전기, 소방분야 등 감리는 사업주체가 관련법에 따라 별도 발주 예정이므로 감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바. 감리업무 수행실적 중 실적증명원 및 사실확인서에 주상복합으로 표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평가합니다.
- 사.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음
- 아. 응모서류 신청 및 예정가격 추첨은 감리자 지정 신청자(대표)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가 신청(추첨) 또는 입회할 수 있음
  - ※ 불참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추첨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자 모집공고시 우리구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모집공고가 있을 경우 감리자(감리회사)는 중복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동일 감리원은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공정과 중복 배치할 수 없음. 만일 중복 배치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 차. 감리 응모서류 중 재무상태검토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상태검토보고서(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사본 제출시 원본지참 후 확인 받기 바람)
- 카. 감리자로 지정된 감리회사(감리자)는 지정된 감리원을 해당공사 분야별 공사기간동안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은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 타. 추후 제출되는 증빙서류 중 감리협회에서 발행한 실적 및 경력확인서 상에 연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수행실적증명서(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평가)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됨
- 파. 감리자(감리회사), 감리원 감리업무실적 작성시 첨부된 경력증명서 순서대로 작성하고 경력증명서에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하. 응모서류의 허위작성·위조·고의 누락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응모한 감리자 및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기 지정 된 감리원을 중복하여 응모하는 감리자는 당해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리자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업무를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 교체, 응모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감리자지정신청서 제출 후 보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너.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맞추어 분야별 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하며[단, 법정 인·월수를 초과하는 비평가대상 감리원(건축,토목,설비 구분없음) 1인에 한하여는 부분배치도 가능함]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평가대상) 및 신규감리원(5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 배치에 대한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며, 신규감리원의 인·월수는 평가 인·월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더.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52호, 2009.08.24)을 준용합니다.

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주택과(담당 : 이문희, ☎02-490-3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 지역가점

500세대 미만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

※ 상기 공고내용은 중랑구인터넷홈페이지(<http://jungnang.seoul.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따로붙임
1.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각 1부.
  2. 주요공정계획서 1부.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 양식 1부.
  4. 응모서류 별지 서식 각 1부.

##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6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항 번호 띄어쓰기
- (2)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일본어 차용문자 등 수정
-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
  - (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원재활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과에 비치함(☎490-3375)

2009년 10월 16일

중랑구청장

##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6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7.1.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제명 및 항 번호 띄어쓰기
- (2)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일본어 차용문자 등 수정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규제 업소 중 숙박업소 규정 삭제(안 별표 1)
- (4)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로 사용됨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과에 비치함(☎490-3375)

2009년 10월 16일

중랑구청장